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. 11. 12 선고 2020가단116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1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, 충청북도 충주시 F 임야 28,959m² 중

가. 피고 B은 434,385분의 4,960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C, D, E는 각 260,631분의 496 지분에 관하여

각 2003. 6. 26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65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,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남천규

별지